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6. 20(목) 10:00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자원  
조례안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51호
- 나. 제 출 자 : 이인식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5. 28.
- 라. 회부일자 : 2024. 5. 28.

## 2. 제안이유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 보장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생활권과 삶의 질 향상 및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관련 사업(안 제4조)
- 라.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및 제6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4. 5. 29. ~ 2024. 6. 5.

## 5. 검토의견

### 가.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유로운 출입 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나. 주요 내용

#### 1)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보조전”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전 표지를 발급 받은 보조전으로 규정함
- 장애인 보조전의 종류

구분	내용
시각장애인 안내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청각장애인 보조견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지체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치료도우미견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출처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3. 발행)』

#### 2)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전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

#### 3) 장애인 보조전 생활이용편의 사업 및 지원(안 제4조, 제5조)

- 보조전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홍보, 교육, 정보제공 등 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다. 검토의견

- 장애인 보조건은 법령에 따라 장애인 보조건 전문 훈련기관에서 훈련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특수 목적건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보조건 표지, 발급 절차, 훈련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건의 출입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건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건의 일상생활의 출입 보장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 보조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애인 이동권 및 복지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5. 14.] [법률 제2029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